

캘리포니아 주
공기자원협의회(AIR RESOURCES BOARD)

변경문, 근거 문서, 정보 등의 일반 공개 통지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작업 통제 조치에 대한 수정안 및 퍼클로로에틸렌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요구조건 채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청회 통지**

공청회 날짜: 2007 년 1 월 25 일
변경문 일반 공개일: 2007 년 3 월 20 일
대중 의견 접수 마감일: 2007 년 4 월 4 일

공기자원협의회(협의회 또는 ARB)는 2007 년 1 월 25 일에 있는 공청회에서 ‘캘리포니아
제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CCR) 표제 17, 제 93109 조에 대한 수정안 및
CCR 표제 17, 제 93109.1 조와 93109.2 조의 채택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수정안과 새
규정으로 퍼클로로에틸렌(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 및 관련 장비의 사용이 2023 년 1 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퍼크 제조업자와 유통업자는 영업 기록을 유지하여
캘리포니아 드라이클리닝 업소들에 대한 퍼크 매출을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퍼크가 1991 년에 유독성 대기 오염물질로 확인된 후, 협의회는 1993 년에 처음으로
드라이클리닝을 규제하는 대기 유독물질 통제 조치(ATCM)를 채택하였습니다. ARB
실무진이 2003 년부터 후속 평가를 실시한 결과, 추가 조치를 취하면 이 범주의
오염원에서 나오는 퍼크 배출가스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수정안을 시행하면, 협의회는 드라이클리닝 기계 및 관련 장비에서 나오는 퍼크
배출가스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사실상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승인된 수정안은 2008 년 1 월 1 일을 기하여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신규 설치 및
퍼크 발수 처리 작업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들은 건조 캐비닛과 세척조를
2008 년 1 월 1 일까지 현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기존 주거공존 시설(주거와
벽을 공유하거나 주거와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한 시설)의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는
2010 년 7 월 1 일까지 현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개조한 기계와 사용 연한이
15 년 이상 된 기계는 2010 년 7 월 1 일까지 현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나머지
퍼크 기계는 사용 연한이 15 년 이상이 되면 현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 같은
요건을 준행하면 드라이클리닝 작업에 쓰이는 퍼크 기계와 관련 장비가 2023 년 1 월
1 일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퇴출됩니다. 아울러, 퍼크 드라이클리닝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우량 작업 관행에 힘써야 합니다.

협의회의 조치

2007 년 1 월 25 일에 있는 공청회에서 협의회는 실무진의 제안과 대중의 의견 및 증언을
검토한 후 실무진의 제안을 일부 변경하여 승인하는 ‘결의안 07-5’(Resolution 07-5)를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에는 최초 통지된 규제문(별첨 A) 및 이 규제문에 실무진의

제안으로 변경을 가한 내용(별첨 B)이 부가되었습니다. 두 자료 모두 공청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통지에 별첨 1로 첨부되어 있는 자료는 결의안 07-5와 그에 딸린 별첨 B입니다. 제안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협의회는 승인된 변경 사항을 그에 순응하는 다른 적절한 변경 사항과 함께 최초에 통지된 본문에 통합시키고, 그러한 변경 사항을 최소 15일간의 보충 의견 제시 기간에 공개하도록 하라고 집행관에게 지시하였습니다.

공개되는 변경 사항

이 통지에 의하여, 변경문은 협의회 집행관이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공개됩니다. 협의회가 승인한 변경 사항은 아래에 요약되어 있으며 이 통지에 부가된 별첨 2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통지된 규제문에 부가된 내용은 이중 밑줄로 표시되어 있고 삭제된 내용은 이중 실선으로 지워져 있습니다.

협의회 결의안 07-5(별첨 1) 및 별첨 2를 통해 제공된 개정된 규제문은 다음 주소의 ARB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추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arb.ca.gov/regact/perc07/perc07.htm>.

이 문서들의 사본은 다음 주소로 협의회 공보실에 요청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Public Information Office

1st fl. Visitors & Environmental Services Center

1001 I Street, Sacramento, CA 95814.

Linda Keifer(린다 카이퍼)에게 (916) 327 - 1505 또는 lkeifer@arb.ca.gov로 연락하여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 회사 이름(해당시), 우편주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제안된 변경 사항 요약

다음은 해당 규정에 대하여 제안된 실질적인 변경 사항과 그 근거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반 규정: 위반 규정은 제 93109, 93109.1, 93109.2 조 등에서 삭제됩니다. 1993년에 채택된 ATCM에는 집행과 관련한 특정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견 제시자들은 위반 규정이 ARB 또는 지역 대기국이 이용할 수 있는 집행 옵션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 규정들을 삭제한다고 해서 주법에 의한 규정의 집행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문서 및 정보

공청회 이후, 실무진은 해당 규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 11347.1 조에 의하여, 실무진은 규칙 제정의 근거가 되는 근거로서 다음 문서를 규칙 제정 기록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보고서: 퍼클로로에틸렌 드라이클리닝 작업 통제 조치에 대한 제안 수정안의 일차 사유서,” 캘리포니아 공기자원협의회, 2006년 4월 7일.

의견 및 후속 조치

정부법 제 11346.8 조에 의하여, 협의회 결의안은 집행관에 대한 지시에서, 변경된 규제문을 최소 15 일간의 서면 보충 의견 제시 기간에 일반에 공개한 후 CCR 표제 17, 제 93109 조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나아가 집행관은 이 기간에 제출되는 서면 의견을 검토하여, 접수된 의견에 비추어 해당 규정에 적절한 변경을 가하고, 변경된 규정을 협의회에 제출하여 정당한 근거 여부에 대하여 추가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가 승인한 변경 사항 및 규칙 제정 기록에 추가되는 문서에 관한 서면 의견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일반 우편, 전자 우편, 팩시밀리 등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곳:

Clerk of the Board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23rd Floor
Sacramento, California 95814

전자우편 접수: <http://www.arb.ca.gov/lispub/comm/bclist.php>

팩스는 반드시 (916) 322-3928 협의회 서기(Clerk of the Board)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집행관의 검토를 원하는 의견은 반드시 위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ARB 에 제출하여 이 통지의 서두에 기재된 대중 의견 접수 마감일 오후 5 시까지 ARB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집행관은 해당 규정의 본문에 대한 변경 사항 및 기록에 부가되는 추가 문서와 관련한 의견만 검토합니다.

별첨 (2)